

2023년도 제15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6. 29.(목),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신창환(분과위원장), 강태욱위원, 하병현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148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원 보호심의부 반하람 주임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707건(안전번호 제2023-78057호~79763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3-78057호~78058호는 언론매체에서 타인의 사진을 이용한 사안으로, 저작물성 및 합법 시장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점,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언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에 과도한 제한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안전번호 제2023-78059호~78074호는 방송사업자 등의 복제권·전송권·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기기를 판매하는 게시물을 전송한 사안으로,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3-78075호~78110호는 블로그에 뮤지컬의 무단촬영 영상 등 판매 게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전번호 제2023-78111호~78122호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전번호 제2023-78123호~78126호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로 연결되는 최신 대체사이트로 연결되는 직접링크 등을 제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3-78127호~78128호는 만화의 리뷰, 설명 등을 위해 해당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한 사안으로, 인용 또는 공정이용으로 저작권이 제한될 것으로 보이는 점, 원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안전번호 제2023-78129호~78142호는 블로그 및 카페에서 불법복제물을 제공 중인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 중인 바 저작물의 시장 및 가치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전번호 제2023-78143호~79763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불법 복제한 영상물 등에 해당되는 심의안전 게시물 2,744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15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3-148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반하람 주임: 제2023-148회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내 저작물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 및 기타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A 위원: 저작물명 등은 심의대상 게시물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비식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참석위원 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B 위원: 제2023-148회 제2호 안건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우리 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쪽수 기재 후 비공개함이 타당함.
- 참석위원 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에 대해 만장일치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음.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등 심의대상 게시물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하고, 구글 검색 결과 제한 심의는 쪽수를 기재하여 비공개함.

3. 안전상정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반하람 주임: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제1항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으신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척됨. 각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척사유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해당 안건 심의시 사유를 밝히고 회피하여 주시기 바람.
- 참석위원 전원: 해당 없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반하람 주임: 금일 심의안건은 36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2,922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전번호는 제 2023-78057호~79763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 반하람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 2023-78057호~78058호는 권리자(실명 1인)가 신고한 사안으로, 인터넷 신문 'ㄱㄱㄱㄱ'에 게시된 사진(이미지)의 무단복제물 총 2건임.

(안전번호 제2023-78057호~78058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 ☆☆☆☆☆ ☆☆ ☆☆' 및 '♡♡ ♡♡♡ ♡♡ ♡♡♡ ♡♡♡♡♡ ♡♡♡♡♡'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면서, 해당 가게 및 팝업스토어를 다룬 민원인 게시물의 사진을 복제하여 이용한 것으로 보임.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해당 사진의 일부를 자르고 확대하여 전송중이며, 출처는 사진 하단에 네이버 블로그 '민원인 아이디어'로 표시하고 있음.

민원인은 하루 2만여 명이 방문하는 개인 블로그를 운영 중인 푸드 전문블로거로, 심의대상 게시물에 사용된 사진을 직접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원본을 제출하였음.

본 사안의 경우, 이용된 사진은 가게 내부 및 팝업스토어의 안내문을 촬영한 것으로 피사체의 선택, 구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저작물성에 다소 의문이 있음. 저작물을 생산하는 언론사인 게시자가 촬영자의 허락 없이 사진을 무단 이용한 것에 대해 비난가능성은 있으나, 불법복제물에 의한 급격한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하는 우리 시정권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음.

한편 게시자는 언론사이고 심의대상 게시물은 '☆☆☆☆ ☆☆☆☆☆ ☆☆ ☆☆' 및 '♡♡ ♡♡♡♡♡ ♡♡♡ ♡♡♡♡♡ ♡♡♡♡♡'의 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기사로, 이미지 자체를 공중의 감상에 제공하는 것이 이용의 목적은 아님.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시정권고의 이행이 이루어질 경우 언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이루어질 우려 또한 있음. 덧붙여 게시자는 사진 하단에 네이버 블로그 '민원인 아이디어'로 출처를 표시하고 있어 이미지의 권

리자와 이용자가 명확한 본 사안과 같은 경우 권리자가 직접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음.

안전번호 제2023-78057호~78058호의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이용 중인 사진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합법시장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점,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언론사의 기사가 삭제되어 언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에 과도한 제한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3-78057호~78058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언론사의 기사라는 점이 걸리기는 하지만 검토 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부결 의견임.
- B 위원: 저작물성의 판단이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민원인의 사진이 다른 사진에 비해 저작물성이 있다고 보기에 어렵다고 생각함. 또한, 언론사가 기사를 쓰면서 출처까지 밝혔다면 이는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어 보임. 시정권고의 부결 의견임.
- C 위원: ●●●이 운영하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직접 판매를 하고 있는 사진은 쉽사리 찍을 수 있는 사진은 아니라고 생각함. 언론사

에서도 이러한 사정 때문에 민원인의 사진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임. 저작물성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함. 시정권고의 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78057호~78058호의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이용 중인 사진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합법 시장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점,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언론사의 기사가 삭제되어 언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에 과도한 제한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 반하람 주임: 안전번호 제2023-78059호~78074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 ▲▲▲ 등의 쇼핑몰 사이트에서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판매하고 있는 사안 총 17건임.

(안전번호 제2023-78063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 셋톱박스를 판매하고 있음. 해당 기기는 실시간 방송 및 VOD를 불법으로 연결하여 재생할 수 있도록 함.

본건 기기는 권리자의 복제권, 전송권,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게시자가 본건 기기를 판매하는 행위는 복제권, 전송권, 동시중계방송권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본 건 판매자는 본 건 기기를 판매하기 위해 심의대상 게시물을 작성하였는바,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

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3-78059호~78074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검토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78059호~78074호는 심의대상 게시물들의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 반하람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3-78075호~78110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뮤지컬의 밀캠, DVD, 온라인 생중계 녹화 영상 등을 ■■■■ 블로그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사안 총 82건임.

(안전번호 제2023-78090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심의대상 게시물은 '○○○ ○○ ○○ ○○ ○○'라는 제목으로 판매중인 불법복제물의 목록을 게시하고 있음. 게시자는 수십 개의 비밀댓글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고 있음.

안전번호 제2023-78075호~78110호의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C 위원: 안전번호 제2023-78090호의 심의대상 게시물의 제목에서 ‘**●**’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 반하람 주임: OST를 의미함.

- C 위원: 보통 뮤지컬 작품을 위주로 목록을 게시한 게시물들을 심의했었는데 심의대상 게시물에는 연극의 목록도 게시되어 있는 것인가.

- 반하람 주임: 그러함. 연극의 경우, 작품 내에서 사용되는 BGM을 OST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을 통해 연극의 밀캠 영상도 거래되고 있는 것인가.

- 반하람 주임: 그러함. ‘**◆◆◆◆**’ 목록 중 ‘**●●●●**’은 연극 작품임.

- C 위원: ‘**◆◆◆◆**’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 반하람 주임: 연극이나 뮤지컬의 경우, 커피숍의 쿠폰처럼 공연을 여


러번 관람하는 관객들에게 재관람 선물로 실황 영상이나 OST를 증정하는 경우가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이러한 방식으로 증정된 영상을 교환 및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C 위원: 그렇다면 연극의 전체 러닝타임을 촬영한 영상을 증정하는 것인가.
- 반하람 주임: 보통 하이라이트 영상처럼 일부를 찍어서 편집한 영상을 증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B 위원: 그렇다면 이 영상은 기획사에서 제작해서 판매 및 증정하는 정품 영상이라는 의미인 것인가.
- 반하람 주임: 그러함. 다만, 기획사에서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 증정하는 영상을 의미함.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의 목록 중에 부분적으로는 정품이 섞여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임. 정품 영상의 경우 저작권 침해로 문제 삼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 같음. 다만, 심의대상 게시물에는 밀캠 영상과 정품 영상이 섞여있고, 밀캠 영상의 경우 확산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23-78075호~78110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검토 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78075호~78110호의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 반하람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 2023-78111호~78122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출판물을 스캔한 PDF파일을 '♥♥♥♥♥' 및 '♣♣♣♣'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사안 총 20건임.
(안전번호 제2023-78112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에서 문제집을 스캔한 PDF파일을 제공하고 있음.
해당 안전번호 제2023-78111호~78122호의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인 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3-78111호~78122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검토 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78111호~78122호의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불법복제물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인 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 반하람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3-78123호~78126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블로그에서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인 ‘♠♠♠’, ‘★★★’ 등으로 연결되는 경로를 제공중인 사안 총 4건임. (안전번호 제2023-78126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블로그의 직접링크를 통해 불법복제물 제공 해외사이트의 최신 대체 URL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를 거쳐, 불법복제물 제공 해외사이트로 연결됨. 직접링크가 게시된 사이트 총 2개는 2022~2023년 중 보호원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구글’에 검색 결과 제한을 요청한 바 있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의 대체사이트로 확인됨. 해당 안전번호 제2023-78123호~78126호의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인 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3-78123호~78126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검토 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78123호~78126호의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불법복제물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인 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 반하람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3-78127호~78128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만화를 소개 또는 리뷰하는 블로그 게시물 총 3건임.
(안전번호 제2023-78127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만화 '▼▼▼'의 최신 연재분에 대해 자신의 감상, 관련 정보 등을 기재하며 해당 저작물 또는 다른 저작물(애니메이션)의 일부를 이용하고 있음. 게시물의 내용은 특정 부분(특정 캐릭터,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감상을 서술하는 것으로, 저작물의 전체를 게시하거나 그 내용을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지는 아니하였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물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등장인물 중심의 일부분을 이용하고 있는데, 만화에 대해 알리고 자신의

생각을 전하며 흥미를 유발하는 정도의 효과만 있을 뿐 인용으로서 공정한 범위를 벗어난다거나, 적어도 원저작물 자체를 대체하고 원저작물의 시장 또는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번역의 질에 대한 리뷰를 게시한 것인가.
- 반하람 주임: 번역의 질에 대한 리뷰라기보다는 최신 연재분에서 캐릭터들 간의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 싸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하며, 앞으로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추측하는 내용을 게시하고 있음.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이용하고 있는 저작물은 저 스틸 사진들이 전부인 것인가.
- 반하람 주임: 그러함. 해당 저작물을 원작으로 하여 제작한 애니메이션의 일부를 캡처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의 제목의 '1081화'는 애니메이션의 회차가 아니라 연재되고 있는 만화의 회차를 의미하는 것인가.

- 반하람 주임: 그러함.
- A 위원: 그렇다면 심의대상 게시물이 이용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의 캡처는 만화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회차의 캡처인 것인가.
- 반하람 주임: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회차의 캡처는 아님.
- B 위원: '1081화'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인물의 이미지만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C 위원: 게시자는 해당 만화의 최신 연재분이 공개될 때마다 리뷰를 게시하고 있는 것인가.
- 반하람 주임: 게시자는 블로그를 통해 해당 만화 외에도 ♡♡ ♡♡ ♡나 ■■■■ ■■■■ 등에 관한 내용을 게시하고 있음. 해당 만화의 리뷰는 1035화부터 1084화까지 게시한 것으로 확인됨.
- C 위원: 1035화의 리뷰를 시연해주시기 바람.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게시된 블로그의 다른 리뷰글을 확인하며) 만화에 대한 분석을 주로 하는 리뷰글로 보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3-78127호~78128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검토 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78127호~78128호의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인용 또는 공정이용으로 저작권이 제한될 것으로 보이는 점, 원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 반하람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 2023-78129호~78142호는 민원인(실명 1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블로그 및 카페에 게시된 영상(영화·방송)의 불법복제물 총 50건임.
(안전번호 제2023-78132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블로그에서 영상 (방송) ‘▲▲▲ ▲▲’의 1087화 전체분량을 스트리밍 형태로 제공 중 임.
해당 안전번호 제2023-78129호~78142호의 50개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이용하고 있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3-78129

호~78142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검토 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78129호~78142호의 심의대상 게시물은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이용하고 있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 반하람 주임: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 제2023-78143호~79736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드라마 '박하경 여행기'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3-78359호는 웹하드에서 드라마 '박하경 여행기'의 1화에서 8화 전체분량을 71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3. 5. 24.에 웨이브에서 독점 공개한 드라마임.
(영화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3-78956호는 웹하드에서 영화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을 34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3. 6. 21.에 극장 개봉한 영화임.
(영화 '트랜스포머: 비스트의 서막'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3-79087호는 웹하드에서 영화 '트랜스포머: 비스트의 서막'을 26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3. 6. 9.에 극장 개봉한

영화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전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3-78143호~79736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전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참석 위원 전원: 안전번호 제2023-78143호~79736호는 모두 불법 복제된 영상물, 출판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78143호~79736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3-78057호~78058호는 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78059호~78074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78075호~78110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78111호~78122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78123호~78126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78127호~78128호는 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78129호~78142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78143호~79736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이 제15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15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7. 6.

분과위원장 신창환

위원 강태욱

위원 하병현